

『2026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화 지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템(또는 아이디어)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참여자 대상으로 『2026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3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원기간** : 2026. 8월 ~ 11월
 - (참여자 모집기간) 2026. 7. 3.(금) ~ 2026. 7. 13.(월) 14:00까지
- 지원대상**
 - 『2026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참여자로 만 39세 이하이며,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인천인 창업 후 3년 이내창업자
 -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방법' 참조
- 선정규모** : 3명 내외
- 지원내용**
 - 창업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기업별 최대 1,000만원) 지원
 - * 기업별 600만원 ~ 1,000만원 내 차등지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등록 및 연계 지원

□ 신청자격

- 아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
 - 2026년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멘토링 참여자
 - 만 39세 이하인 자(87.1.1 이후 출생)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창업 후 3년 이내(23.2.1 이후 창업) 창업자
-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 예비창업자는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 내 사업자등록(본점) 필수**
-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개념 세대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화 지원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7. 3.(금) ~ 7. 13.(월) 14:0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z7qKV2n3xKg7HJmdA>)
 - * 접수는 마감일(7.13.) 14:00까지 제출 완료 된 것에 대하여 유효함
 - ** 접수완료 후 보완 및 변경 불가능하며,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양식)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신청양식)
- ③ 약약서(신청양식)
- ④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⑤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구분	목 록		
공통 서류	신청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 만 39세 이하 청년 자격 요건 확인용(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개별 제출 서류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개인사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사업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발급절차 : 국세청 홈택스→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① 예비창업자		② 개인사업자	③ 법인사업자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사실증명서(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① 신청자 신분증 사본 ②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은 **공고일 기준('26.7.3.) 3개월 이내** 발급본

* **사실증명서류는 공고일 이후('26.7.3.)** 발급본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 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
-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는 없음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3

지원사항 및 기간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11.13.(금)

□ 지원내용 : 기업별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자금	-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부가세 제외) * 평가를 통해 각 기업별 차등지원(600만원 ~ 1,000만원 범위) - 사업화자금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1. 13.(금)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항목</th> <th>지원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외주용역비</td> <td>-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지급하는 비용</td> </tr> <tr> <td>특허권/ 무형자산취득비</td> <td>-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td> </tr> <tr> <td>마케팅비</td> <td>-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td> </tr> </tbody> </table>	지원항목	지원내용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무형자산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마케팅비	-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지원항목	지원내용							
	외주용역비	- 사업계획서 상의 시제품제작 및 제품고도화와 관련하여 외부 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제작하는데 지급하는 비용							
	특허권/ 무형자산취득비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아이템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							
마케팅비	- 제품 및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영상, 홍보물 제작,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국내·외 전시회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 지급 절차: 지원금 범위 내 지원금 사용 승인 신청서 제출 ⇒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서비스 구매 및 거래처 비용 선지급 ⇒ 사업화 검수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 검토 후 창업자에게 지원금 지급									
후속연계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으로 등록 -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 센터 프로그램 연계 지원								

□ 평가방법

- (선정규모) 총 3명 내외
- (평가절차)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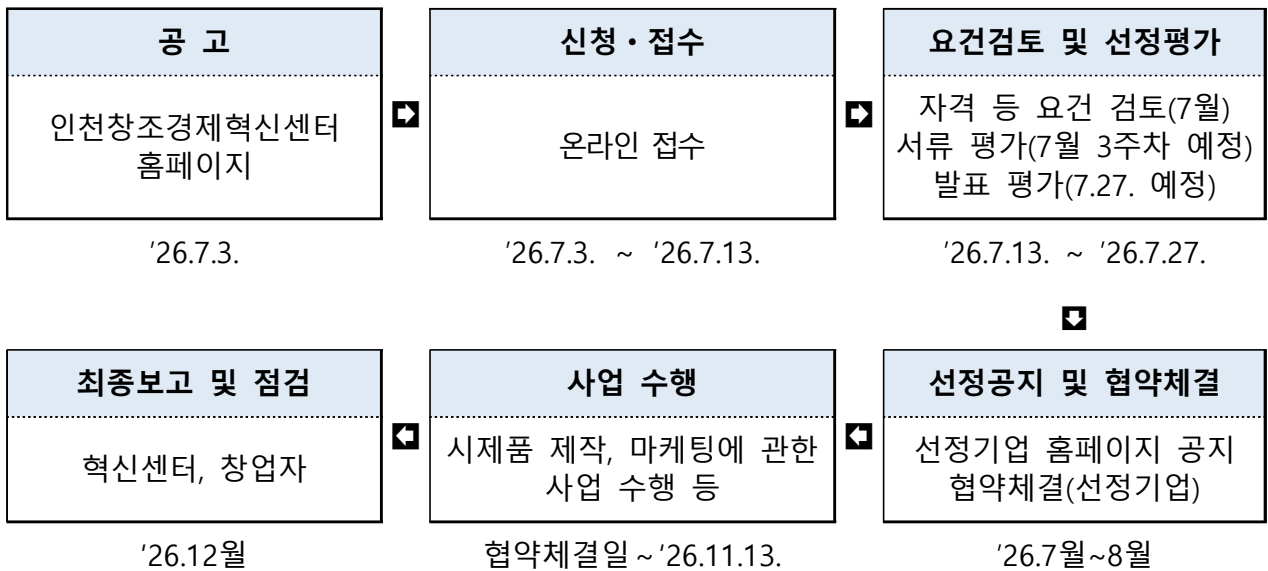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등 검토
-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발표평가 :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구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면평가
 - * 발표평가는 대표자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 선정 후 결격사유 해당 등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 (평가지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세부 내용
문제인식	1. 창업 아이템의 필요성 - 창업 아이템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문제점,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	2. 창업 아이템의 개발 계획 -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로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확보 전략, 사업비 집행 계획
성장전략	3. 사업화 추진 전략 - 경쟁사 분석, 목표 시장 진입 전략, 창업 아이템의 비즈니스 모델(수익화 모델),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유치(자금 확보) 전략, 사업 전체 로드맵(일정 등) 및 중장기 사회적 가치 도입계획
팀 구성	4. 대표자 및 팀원 구성 계획 - 대표자의 보유 역량(개발/구체화/성과 창출 등), 팀원 보유 역량, 업무파트너 현황 및 활용 방안 등

□ 사업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야 함
 -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서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지역 이전 시 기 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6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휴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비를 전액 환수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센터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유의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문의처

문의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생태계팀 담당자
- 전화번호 032-458-5036 / 이메일 mk037@ccei.kr